# 조세지원 및 조세감면 소식란

## [창업중소 · 벤처기업세액감면] 창업중소 및 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

### 1. 개 요

▪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하여 창업초기에 일정기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액을 감면해 주는 제도(조세특례제한법제6조)

### 2. 창업중소기업의 종류 및 범위

▪ 창업중소기업(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자)

- 업종기준 : 제조업, 광업, 부가통신업, 연구 및 개발업, 방송업, 엔지니어링사업,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 관련업, 물류산업 분야의 중소기업으로서 사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중소기업
-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자
  · 수도권의 범위 :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〔별표 1〕

▪ 창업벤처중소기업

- 업종기준 : 창업중소기업과 동일
- 벤처기업요건 : 창업후 2년이내의 기업으로서 1999.8.31이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

### 3. 조세지원의 내용

▪ 창업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 연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% 감면

▪ 지방세감면

- 등록세, 취득세 :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100%감면
- 재산세, 종합토지세 :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창업일로부터 5년간 50% 감면

### 4. 조세감면절차

▪ 수도권중 감면이 배제되는 지역의 범위(조특법시행령[별표 1])

※ 제1호의 지역중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항을 제외한다

※ 문의처

▪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 : (02)503-9211, 500-5311~3
▪ 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 : (042)481-4408~9
▪ 소관세무서, 관할시 · 군 · 구

# 2001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계획 공고

## 1. 사업개요

▪ {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}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조건으로 무담보·무이자의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고, 기술개발 성공시 정부지원금액의 일부를 상환받는 사업임

▪ 지원대상은 1년이내에 개발완료가 가능한 신제품 개발기술로서, 정부는 전체 개발사업비의 75% 범위내에서 최고 1억원까지 출연·지원하고 나머지는 기업부담으로 추진

▪ 2001년도 정부지원 예정액 : 861억원

- 일반과제 : 660억원, 전략지원(공모)과제 : 180억원, 특허기술개발과제 : 15억원

· 전략지원(공모)과제는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발굴한 과제와 기술경쟁력평가를 통해 도출될 지원과제 임. (세부과제목록은 2001. 2월말 중소기업청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)

〈우대지원 분야〉

▪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

- 신청·접수완료일 현재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내의 업체에 한함

▪ 중소기업청이 기술경쟁력을 평가하여 선정한 {기술경쟁력우수기업}

## 2. 신청자격

▪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등록한 중소제조업체. 다만,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공장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인정함

① 소프트웨어(표준산업분류 7220, 7231 및 7240) 및 공업디자인서비스업(표준산업분류 74329)

②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제조업체

③ 중소기업진흥공단, 대학, 국공립연구기관,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가 운용하는 창업 또는 기술보육센터에 입주중인 중소제조업체

④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

## 3. 신청서 교부 및 접수

■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

- 신청기업의 주된 사무소가 위치한 소재지의 지방중소기업청
- 대전·충남 지역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
- 특허기술 개발지원은 한국발명진흥회

■ 접수기간

- 일반과제, 특허기술개발과제 : 2001. 1. 6 ~ 1. 15
- 전략지원과제

· 1차 : 2001. 4. 2~14, ·2차 : 2001. 5.14~5. 2

### 4. 평가방법

- 관리기관(지방청 3등)에서 해당분야 전문가를 신청업체에 대한 사전검토, 현장·경영평가실민간관리기관에서 분야별, 지역별로 산·학·연 전문가 5인 이상으로 구성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
- 평가는 현장·경영평가(25점)와 기술성 및 사업성(78점)으로 평가되며, 우대지원 분야는 가점을 부여함
  - 일반 과제의 경우 현장·경영평가 점수 순위가 일정 수준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기술성 및 사업성을 평가·심사함

### 5. 문 의 처

| 기 관 명 | 대표전화 | 주 소 |
|---|---|---|
| 중소기업청 | 042-481-4442/51 |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|
| 서울지방중소기업청 | 02-509-7016 |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|
| 부산·울산지방중소기업청 | 051-335-4033 |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산 763-13 |
| 대구·경북지방중소기업청 | 053-659-2227 |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 2003-18 |
| 광주·전남지방중소기업청 | 962-360-9203 |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300 |
| 인천지방중소기업청 | 932-450-1152 |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445-1 30B-IL |
| 경기지방중소기업청 | 031-290-6954 |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111-7 |
| 강원지방중소기업청 | 033-258-3530/3 | 강원도 춘천시 후평1동 257-24 |
| 충북지방중소기업청 | 043-230-5332 | 충북 청주시 복대동 418-6 |
| 전북지방중소기업청 | 063-213-1912 | 전북 전주시 팔복동 2가 270 |
| 경남지방중소기업청 | 055-268-2551 | 경남 창원시 신월동 100-3 |
| 제주지방중소기업청 | 064-723-2104 | 제주도 제주시 월평동 299-1 |
| 한국생산기술연구원 | 041-589-8064 | 충남 천안시 입장면 흥천리 35-3 |
| 한국발명진흥회 | 02-557-1077/8(502) |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14-1(발명회관) |

'환경오염 억제와 보다 깨끗한 생활환경을 위하여'

BIO CERA (주)바이오 세라

· 본사 :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0-24 (용진빌딩4층) Tel: 02-3463-2396/7 Fax: 02-3463-2395
· 연구소 : 전북 완주군 봉동읍 신성리 6-1 Tel: 063-262-6440/1 Fax: 063-262-6279
· URL. http://www.biocera.co.kr · E-mail : biocera@biocera.co.kr